

第61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7月 1日(月) 11時 25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面

(11時 25分 開議)

○委員長 玄壽漢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개의를 선포합니다.

2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를 위하고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1년 여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을 맡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안건 2개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洪柱喆 議案係長 洪柱喆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6년 6월 17일鍾路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6월 18일議長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안건이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 상정을 해서 두 안건을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1時 28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같이 상정합니다. 總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안녕하세요? 總務局長 吳炳漢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玄壽漢委員長님과 委員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산업과에 가스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구 본청 정원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지도계는 계장 1명과 직원 3명을 증원하고, 산업과에는 가스 안전관리요원 1명을 증원하여 현재의 구 본청 정원 1,113명을 1,11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증원은 현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께서 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정원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 요구하신 총무과 의회협력계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감사실에서 맡고 있던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안전순찰대로 이관하여 안전점검 기능과 환경순찰 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또한 총무과에 의회협력계를 신설함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의회협력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 분장사무에 명시하여 국제교류 업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구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 신설에 따

른 분장사무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7
----------	-----

제출년월일 : '96. 6.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 사유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 및 구의회와의 협력 강화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순찰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
- 의회협력계 신설
 -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

3. 참고자료

-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
 - 시정 12200 - 338(96. 5. 2)
- 구 기구·정원조정계획(구청장 방침)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감사실)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총무국)의 제2항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환경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4조(감사실) 1~2 (생략) <u>3. 환경순찰업무에 관한사항</u> 제6조(총무국) ① ② 1. ~ 3 생략 (신설) 4.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1. (생략) 2. <u>지방의회에 관한사항</u> 3. <u>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u> 4. <u>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u> 5. <u>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④ ⑤ 1. ~ 6 (생략) (신설)	제4조(감사실)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총무국) ① ② 1. ~ 3 (현행과 같음) <u>4.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u> <u>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6.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1. (현행과 같음) 2. <u>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u> 3. <u>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u> 4. <u>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④ ⑤ 1. ~ 6 (현행과 같음) 7. <u>환경순찰업무에 관한 사항</u>
(參照)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 사유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 지도·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강화 및 가스 안전관리기능 확충을 위한 안전지도계(민방위 재난관리과) 신설 및 산업과의 연료계(가스연료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원 증원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

의안
번호

436

제출년월일 : '96. 6.

제출자 : 종로구청장

2.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1113 → 1118명)
- 민방위재난관리과 — 4명 증
 - 6급 1명 : 행정 · 건축
 - 7급 1명 : 건축
 - 8급 2명 : 행정 1. 토목 1명
- 산업과 — 1명 증
 - 7급 1명 : 화공

3. 참고자료

- 지방재난관리기구 · 인력보강지침(시정12200, -338(96. 5. 2))
-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지침(시정 12200-337 (96. 5. 2))

4. 신 · 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중 “구 본청 : 1113”을 “구 본청 : 111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 ----- 1. 구 본 청 : 1113명 2. ~ 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 구 본 청 : 1118명 2. ~ 4 (현행과 같음)
○委員長 玄壽漢 吳炳漢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의사 일정 1항과 2항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6월 17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실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기획예산과 의회협력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안전지도계가 설치되고	총무과에는 의회협력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개편 내용을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 이하 사항은 의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 이상만 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기구개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 의회협력 업무를 기획계에 담당자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업무를 관장해 왔었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과간 업무이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이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환경순찰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간 이동

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환경순찰제는 폐지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되어서 환경순찰 업무를 안전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전지도계의 인원은 신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연료계가 지금 가스사용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스연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공직이 7급으로 한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에 증가되는 것은 안전지도계에 세 사람, 가스연료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에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영선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선계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은 없고 기존 인력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가 모범규정인데 제10조제3항에 「시·군·구에 국·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동규정 제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국·실·과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금 계 사항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규칙은 구청장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제3항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내무부에서 승인사항이 1996년 4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해서 종전의 미관 관리 위주의 환경순찰 업무에서 앞으로는 안전 위주의 환경순찰 업무로 발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회협력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폐지되었던 의회협력계를 총무과로 신설해서 국제교류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원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에 기구설치조례와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정원 4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6급은 건축직 또는 행정직으로 1명, 7급은 건축직 1명, 8급은 행정직 1명과 토목직 1명씩 해서 4명이 증원되고, 산업과 연료계를 가스연료계로 함에 따른 1명은 화공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법규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동규정 제1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항의 내무부장관 승인이 1996년 5월 2일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설치 및 가스연료계 설치로 인한 인원보강으로 관계법규에 의한 승인 절차 등을 거친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의회협력계, 영선계 등 계 단위 인원 보강 사항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쭙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셨지만 총무과장이 지금 인사 발령 중이므로 과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사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허락하신다면 국장님과 함께 인사계장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인사계장을 앉혀 가지고 보충 답변을 참고인 자격으로 듣는 걸로 해가지고 답변석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人事係長님! 옆에 앉아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 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두 가지 안전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두 안전을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는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되어서 '96년 4월 29일자로 승인을 받은 事項입니까? 또 그리고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승인사항으로써 '96년 5월 2일자로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조례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조례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 1,113명에서 1,118명으로 5명을 증원시켰는데 안전지도계장 1명 외 직원 3명, 가스관리요원 1명 해서 5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증원을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이 5명에 대한 증원을 소위 시에 인원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기능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일부는 서울시에서 우리 증원을 승인을 했고 일부는 우리 정원 중에서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니까 그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현재 정규직원에 대한 신규

채용방법은 우리 각 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25개 구청에 그 증원 요원을 감안해서 신규채용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법적인 절차에 걸쳐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배정을 합니다.

○朴文培委員 그래서 本 委員은 지방자치에 의한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위의 승인사항을 규정으로 해서 증원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 같은 조례(안)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자치적으로 구에서 채용하는 이러한 소위 자치구의 인원 조정 기득권을 시에 건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험과, 시험 출제요원이라든가 타구와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각 구 자치 구청장 협의하에서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증원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朴文培委員 일괄 기능직에 대해서는 정규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건축이라든가 토목, 가스에 관한 운영요원의 공무원 채용은 자치구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충분히 공개적인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권한 위임이 많이 안되어 있어서 지방자치가 형식에 맴도는 이러한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들이 공무원,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발상을 제시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정도의 권한은 자치 구청장이 엄선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중앙에서 임명하는 공무원도 있겠고 또 지방자치에서 가감해서 조절하는 의회의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을 쓰거나 기구를 늘리는 그러한 소수의 문제는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러한 건의를 행정부에서도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권익을 찾기

위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千相旭委員! 質疑하세요.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5명의 신규직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내역을 보니까 행정 또는 건축직 6급이 1명, 7급 건축직이 있고 8급에서 9급인데 토목직이 1명 있는데 7급 1명은 가스연료계로 해서 인정이 되는데 영선계는 신설이지만 인원 증원은 없는 걸로 돼있고 안전지도계에 이 3명이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직과 토목직이 3명이나 되지요? 이분들이 안전지도계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기능면에 있어서 납득이 안가는데요?

○總務局長 吳炳漢 안전지도계가 새로 생기면서 도시 재난방지의 주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풍사고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정부에서 도시재난관리법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안전관리계에 토목 그러니까 현재 도로라든가 이런 축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토목 분야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험건물에 대한 분야는 건축직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여기에 들고 가스연료계는 화공기기 쪽입니다.

○千相旭委員 안전진단 관계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현재는 우리가 안전진단은 정밀진단과 육안진단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기능부서로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부서에서의 건축직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이 건 안전지도계는 그 업무를 매월 정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고 또 점검한 보고서를 포함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이 각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千相旭委員 일부 납득은 가는데 저희들이 시

장 같은 데 가보면 종로의 특성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전기 안전진단입니다. 그동안 화재의 원인이 누전입니다. 붕괴되는 것보다도 누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시장이나 기타 상가 같은 데 들어가면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전기기사가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종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건물의 붕괴에 의한 안전도 필요하지만 화재 안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모든 안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구분하면 우리 區廳에 건축과가 있지만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하지만 화재에 대한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고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직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직은 우리 청사의 전기라든가 동청사의 전기를 맡고 총무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실 때 局長님께서 지시를 해서 소방서하고 업무를 협조해서 진단했으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소방서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가지고 소방서의 관계자들과 같이 통일해서 진단했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방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시내무부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제라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소방

기능은 우리 소방본부가 서울시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인사권도 내무부에서 갖고 있고 소방서장도 내무부의 인사명령권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소방서가 어떤 종전의 관선 區廳처럼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경찰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자치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 관리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저희가 자랑 한 번 하면 안전순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보고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비디오 찍는 걸 내무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돌풍이 불어서 나무가 40여 그루 넘어졌는데 저희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안전망을 치는 등 공원녹지과가 올 때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런 안전반을 만들었다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千相旭委員 이번 자연재해로 우리 종로구가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네. 가로수가 한 40그루 넘어졌습니다.

○千相旭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洪起瑞委員! 질의하세요.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千相旭委員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그동안 연료계를 가스계로 개칭함에 있어서 7급 화공직원을 1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연료계 가스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배치가 안됐었나요?

○總務局長 吳炳漢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계장이 가스 전문직종이고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다만 가스사고가 나면 대형화되다 보니까 자꾸 직원을 보강을 하라고 해서 ...

○洪起瑞委員 가스연료계장이 전문직원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가스연료계장한테 가스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해봤더니 산업과에는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요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분이 앉아서 정당한 가스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지 아니면 답변자 말처럼 우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局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연료계장은 전문직으로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화공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고 기능직 사람들도 전기라든가 가스에 관련된 전문직종이고 작년에 연료계장을 일본하고 외국 가스에 관한 전문적인 시찰을 가스개발공사하고 할 때 여비를 들여서 교육이라든가 해외여행을 시켰고 금년도 직원에 대해서 일본 가스에 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본에 가서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가스에 관한 전문직종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 전문직종이 있으면 민원이 만약 돌출됐을 때에는 즉각 출동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설치되면 千 委員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종로에도 가스 공급이 많은 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안전요원이 가스를 다룰 수 있는 한 분을 배치해 놓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는 것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강남이나 서초에서도 가스사고가 났을 때에도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올리고 이렇게 항상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잘 알겠습니다. 가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도시가스안전공사에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도 도시가스안전공사와 공급공사가 있는데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사실상 공사에서부터 가스 배급문제까지는 區廳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계를 보강해서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安哲柱委員! 질의하세요.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本 委員會에서 다루고 있는 이 2건의 조례(안)은 7월 2일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지요?

○總務局長 吳炳漢 네. 7월 2일부터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아까 朴文培委員께서 제시했던 사항 중에서 지금 인원에 대한 것은 충원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總務局長 吳炳漢 네. 충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사고 없는 종로를 위한 안전순찰대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발족하기 위해서 5월 31일 구청 강당에서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과의 안전지도계의 업무를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셨던 것들이고 이미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순찰대의 업무와 그 다음 안전관리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6월 1일날 의안심의 요청을 해왔던 事項인데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안전순찰대의 기동특공대로 인해서 5명의 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에 있는 인원이 여기 차출이 됐겠지요? 그러면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잘 하고 있는데?

○總務局長 吳炳漢 안전순찰대하고 안전관리계하고 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계 단위 밑에 어떤 임시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의회의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이미 차출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專門委員會에서도 심사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과 단위의 심사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議會의 승인을 받고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종로구청사를 한다면 고유의 각 과에 사무분장 기능이 있지만 별도의 새로이 생기는 행정 수요에 의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하면서 議員님들 다만 지난번에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증원된 인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13명에서 이런 요원 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증가되어서 1,11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議員님들께 승인을 받는 事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니까 안전순찰대에 이미 5명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5명을 기동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인원이 어느 과에서는 비어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보면 1996년 4월 29일자와 1996년 5월 2일자 내무부 승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區廳長의 고유사항인 계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 언급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것을 인원충원이 없었다고 해도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사실대로 이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순서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7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안전순찰대 요원도 여기 신문 보니까 대대적으로 선전이 돼 있어요.

○總務局長 吳炳漢 그런 안전지도계와 안전순찰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난관리계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관리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재난안전지도계를 설립하자 해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승인해 주시면 새로이 신설이 되는 거고 안전순찰반은...

○安哲柱委員 또 업무가 다른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 밑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安哲柱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0명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安哲柱委員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은평구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청이 정식 법령으로 승인받아서 발족하기 전까지는 기존 인력을 50명 정도 차출해서 은평출장소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법적으로 정식 발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안전순찰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사무분장상의 그 기능이 있는데 사전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그러한 기능을 그때 그때 행정 수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빠른 시간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발족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4월, 5월 초에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안전지도계 역할을 강화했을 때 굳이 안전순찰대란 것을 발대식을 갖는다거나 발족 안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 안전지도에 5명이 투입됨으로써 다른 과에서 기동발령을 났을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런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데 예를 들어 議員님께서 영선계도 신설해야 되고 의회협력제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의견수렴을 받

은 적도 있습니다. 빨리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기구 개편이란 하루 아침에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丁昌熙委員! 질의하세요.

○丁昌熙委員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전 議員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종로 구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선계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局長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선계는 별도의 인원증감이 없이 사실상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영선계를 설치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근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영선계 설치문제는 議員님께서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일부에서는 영선계가 있어야 된다 일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 내막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영선계를 만들었을 경우 건축직이 영선계에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직이 인허가 업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동청사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만을 맡을 건축직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영선계를 만들어서 어느 곳에 둘 것이냐 타구에 보면 총무과에 공공시설관리계라는 명칭도 있고 건축과에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영선계에 다 몰아두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소관부서에 있는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영선계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사의 설계, 시공, 발주를 다 맡아서 해라 하는 게 가장

복지과의 얘기이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다 말아라. 그러나 그 업무가 영선계 하나로 봤을 때는 막중한 업무량이 가중됩니다. 그게 부담이 되니까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전부는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과하고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이 이번에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빨리 신설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丁昌熙委員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 인원에 대한 직능별 직급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영선계는 계장이 당연히 건축직이고 7급과 8급에서 각각 ○명씩 건축직으로 지금 건축과에 기존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선계로 해서 계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丁昌熙委員 토목직은 없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것은 없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영선계가 하는 업무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지금 영선계는 우리 공영청사 신축이나 설계,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설계, 그리고 시공상의 감독을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종로 구유재산에 관한 공영청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영선계는 그렇습니다. 동청사나 우리 구청사나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나 대지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종전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던 영선반의 개념하고는 전혀 틀리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지난번에 요구하신 내용들이 그런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노인정을 지을 때 해당과의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순찰업무에 소요되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면 정원이 4명 중에서 4명이 증원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의 순찰 업무를 보던 인원 이외에 4명이 더 필요한 건지 정원이 몇 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감사실의 환경순찰계는 계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지금 전체적인 그 인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로 전부다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의회협력계 신설 그 다음에 계의 통폐합하는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체 조정을 해서 하여튼 지도계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丁昌熙委員 안전지도계 신설은 정원은 4명이 고 기존 1명에다 5명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안전지도계가 4명입니다. 전부다 합쳐서

○丁昌熙委員 정원이 4명입니까? 그러면 4명 다 증원하는 걸로 하게 되는 겁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예,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실질적으로 긴급 보수나 처리의 기능도 겸비한다고 치면 기능직도 고용직도 부분 충원이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에 운영하는 안전순찰대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다 맨홀 뚜껑이 벗겨

저서 보행자가 빠질 우려가 있다 할 때, 담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할 때 즉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순찰반이 출동해서 시민이 접근하거나 미리 경고하는 표시를 해놓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규모라든가 그것을 신속히 기능부서에 토목과면 토목과, 하수과면 하수과에 즉시 통보를 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순찰반에서 직원이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직접 복구에 참여를 못하고 기능부서에 공원녹지과에 기능직이 백명씩 있고 토목과에 이삼십명씩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직들이 복구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안전조치를 해놓는 것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의회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안전지도계 역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설된 계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겸비한 그런 기구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또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그런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변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기구에 대한 조정을 승인 받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복구를 하거나 그런 대비를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이러한 안전지도계나 재난관리과의 그런 권한이나 비중이 좀 많이 포괄적으로 함유되어 있을 적에 소관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같은 똑같은 계의 입장이고 계장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비나 그런 예비 방법이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丁委員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안전 조치 이후에 복구작업까지 다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구의 특성으로 봐서 우리 하수과에는 하수에 전문계가 있습니다. 그 하수과장의 기본적인 사무분장에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기능이 있고, 공원녹지과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큰 새로운 엄청난 인원이 한 곳에 모아져서 인력 관리라든가 사실 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 조치 후 복구하는 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은 딱 부러지게 소관부서가 명명백백하게 구분이 될 적에는 국장님 말씀이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나 재난이 2개, 3개 과나 계에 소관되어 가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에 종합 지휘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그 종합 지휘 체계가 재난관리과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그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능부서별 하수면 하수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까 丁委員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다라고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도계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사무분장에 이 사항은 토목과에서 긴급 복구를 하라 하는 작업 명령서가 떨어지면 그것은 어떠한 토목과 소관이 비록 40%의 법적인 사무분장상 책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안전지도계가 생김으로써 해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丁昌熙委員 아무쪼록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생명과 재산권의 안전

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吳炳漢 局長님! 좀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운 영상에 큰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두 안건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중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 7월 2일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될 심사보고서 채택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散會)

○出席委員 10人

玄壽漢	洪起瑞	安哲柱	千相旭	沈載得
鄭泰淳	洪承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出席 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吳 炳 漢
人 事 係 長	權 赫 祐

